

정보보호규정

제정 2017. 3. 8.

개정 2017. 6.14.

1.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가정보원법」, 「보안업무규정」, 「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거하여 광주신용보증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재단의 비밀 등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임직원 및 제3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정보보안”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, 위변조·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·물리적·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.
2. “전자정보”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.
3. “정보통신망”이라 함은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.
4. “정보시스템”이라 함은 PC, 서버, 보조기억매체,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치,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.
5. “사용자”라 함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임직원 등을 말한다.
6. “개인정보”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(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자격, 직업, 재산상황, 채권채무관계 등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2. 제 2 장 정보보안 기본활동

제4조(정보보안 책임) 이사장은 재단의 비밀 등 중요 정보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, 재단의 정보보안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.

제5조(정보보안책임자) ① 재단의 정보보안 관련 업무의 총괄책임자로서 정보보안책임자를 지정·운영한다.

② 제1항의 정보보안책임자는 **경영지원부장**(으)로 한다.

③ 정보보안책임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④ 정보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.

1.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·시행

2. 정보보안 관련 규정·지침의 제·개정
3. 정보보안 업무 지도·감독
4. 정보통신실,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
6.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

제6조(정보보안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정보보안책임자는 매년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정보보안책임자는 제1항의 계획에 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전자정보 보안대책) ① 정보보안책임자는 재단의 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, 중요도에 따라 보호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정보보안책임자는 비밀 등 중요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스템 보안책임) ① 재단의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며,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도입할 경우 시스템관리자를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시스템관리자는 서버, 네트워크 장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진다.

④ 사용자는 개인PC 등 소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본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진다.

제9조(정보통신시설 보호) ① 정보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, 업무 목적에 따라 출입자를 제한하여야 한다.

1. 전산실
2.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안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 및 장소

② 정보보안책임자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정보보안 교육) ① 정보보안책임자는 자체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정보보안책임자는 정보보안 담당 인력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정보보안 점검 등) ① 정보보안책임자는 재단의 정보통신망 운용 관리에 따른 보안취약성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안 취약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정보보안책임자는 재단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규정 및 하위 지침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,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정보보안 사고 대응) ① 정보보안책임자는 비밀 등 중요정보의 유출, 도난, 위·변조 등 정보보안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정보보안책임자는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정보보안책임자는 관련자 징계,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의 수립·시행 등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

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3. 제 3 장 개인정보보호 기본활동

제13조(개인정보보호 책임) ① 모든 임직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이사장은 개인정보의 보호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, 재단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.

제14조(개인정보보호책임자) ① 재단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책임자로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·운영한다.

②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보증기획담당 부장(팀장)으로 한다.

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.

1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규의 수립 및 시행
2.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3.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4.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
5.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6.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
7.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·감독
8.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

제15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)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지침의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(제 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 201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